

#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258
----------	-----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안 제2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실적서류 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평가대상 업무 (안 제4조)

-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다. 평가시기 (안 제5조)

- 군수는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안 제6조)

-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한다.

#### 마. 평가내용 (안 제7조)

-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 현장평가단 평가 : 현장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한다.

#### 바. 평가지침 (안 제9조)

-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사. 현장평가단 구성 (안 제12조)

-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 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 제14조)

- 군수는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자.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안 제16조)

-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06.12~2013.07.0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사전 규제검토 :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평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2장 평가기준

제5조(평가지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제7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현장성을 위하여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한다.

제8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 제3장 평가절차

제9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9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에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 대행계약 해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

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전파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전 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또는 표창	사업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 등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계약기간 연장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영업정지	사업구역 축소, 입찰제한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계약해지	입찰제한

※ 적용방법 : 대행계약 기간 중 1년 단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계약기간 년수로 나눈 산술평균값으로 등급을 적용한 후, 수의계약, 사업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 등 여부 결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환경과장 최찬웅
연락처	(033) 330 -2340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